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04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등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
3. 회 부 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농촌유학이 시도교육청 간 정책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1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등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나, 농어촌유학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유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며,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농어촌유학”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하는 것을 말한다.</u>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u>농어촌체험교육</u>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 ----- ----- ----- -----<u>농어촌체험교육</u> 및 <u>농어촌유학</u>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u>----- -----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어촌유학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하는 농어촌체험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현행 법률에서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으로, 다만, 농어촌체험교육에 농어촌유학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다.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원안(제2123896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전체회의에 상정(2023.11.23.)되었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라. 검토의견

농어촌유학은 도시에 거주하던 학생들이 농촌으로 옮겨 가 일정기간 동안 농촌에 살며 현지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는 도시지역 학생에게는 농어촌의 생태환경과 농어촌학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지역에는 학생 수 증가와 인구 유입을 통한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유학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을 추진해왔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시·도 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으로 구분하여 유학생 및 유학가족 단위로 유학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농어촌유학 지원현황]

지원주체	지원유형	지원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유학센터형	'10 ~ '23 ※24년 예산 미반영
지방자치단체	가족체류형	'21 ~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24.8.16. 제출

[농어촌유학 유형]

유형	내용
가족체류형	농어촌지역에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이주하여 생활
유학센터형	전문성과 시설 등을 갖춘 농어촌유학센터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홈스테이형	농가에서 농가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24.8.16. 제출

농어촌유학 지원사업 대상자 추이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인 '10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농어촌유학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사업의 경우도 '21년에 비할 때 '22년과 '23년에 농어촌유학 학생이 2배가량 증가하고 있음.

2024년 1학기 현재 지역별 농어촌 유학생 현황은 강원도 177명, 전라북도 133명, 전라남도 341명 등 총 651명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학 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원시설(개소)		3	5	12	13	16	19	20	19	22	27	26	29	28	24
유학생 수(명)		-	-	103	199	221	224	238	216	260	266	303	320	314	260
사업비 (백만원)	보조계	99	200	200	375	640	640	640	640	1,460	2,310	1,500	1,500	1,500	1,500
	국 고	99	200	200	187.5	320	320	320	320	730	1,155	750	750	750	750
	지방비	-	-	-	187.5	320	320	320	320	730	1,155	750	750	750	7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24.8.16. 제출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명)

구분	'21	'22	'23
1학기	81	223	235
2학기	147	263	248
합계	228	486	4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24.8.16. 제출

【지역별 농어촌유학생 현황】

(’24년 1학기 기준)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명)
강원도	170	7	-	177
전라북도	127	6	-	133
전라남도	290	45	6	341
합계(명)	587	58	6	65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24.8.16. 제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농어촌유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군수의 농어촌유학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농어촌유학 관련 조례제정 주요현황】

구분	농어촌유학의 정의	주요 지원 사업
강원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농어촌유학"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재학	농어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지역에 특화된 농어촌유학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 농어촌유학 홍보 사업 농어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강원 (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0일 이상 생활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충남 (도)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한 학기 이상 생활 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며 농산어촌생활을 실제 체험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구분	농촌유학의 정의	주요 지원 사업
전남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농산어촌유학"이란 전라남도 관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6개월 이상)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및 운영 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전남 (도)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6개월 이상)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가족 체류 프로그램
전북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농촌유학"이란 초·중학교 학생이 1년 단위로 전학하여, 농촌유학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	농산어촌학교 필요인력 우선지원 자율학교 지정·운영, 통학 편의 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유학생 1인 30만원)
전북 (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 기간(1년 이상)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경북 (도)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가 법률상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도 농어촌유학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동 지원사업은 23년으로 종료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유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안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동 개정안에 대한 예산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8억 8,000만원 이상으로 추계¹⁾되는 바 농어촌유학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까지 현행법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근거로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체험교육에 농어촌유학이 포함됨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현행법 제14조는 농어촌체험교을 실시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는 바, 현행과 같은 유학지원센터 및 학생가족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어촌체험교육과 농어촌유학의 차이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201204호)에 대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참조

2)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체험교육과 농어촌유학 비교】

구분	농어촌체험교육	농어촌유학
내용	농촌 전통문화자원, 경관, 농산물 재배 및 가공시설 등을 활용한 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등 지원	도시지역 학생이 일정기간 농어촌 학교로 전학하여 학습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교육·유학대상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 학생	초·중등 학교 학생
경비 지원대상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에 대한 지원 (운영비, 체험비, 교통비 등)	- 유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유학생·유학생가족단위 지원 ※ 유학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검토
법적근거	「도농교류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도농교류법」 제14조제1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24.8.16. 제출

셋째, 개정안 제14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농촌유학시행지침」에 따르면, 국비(50%)와 지방비(50%)를 매칭하여 유학센터에 지원하였고, 이를 유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로 사용하였음.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농촌유학 시행지침)

- 종사자 인건비(필수): 유학센터별 필수 상근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사용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
* (참고)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원, 월급 2,010,580원(209시간 기준)
- 교육 운영비(필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 재료 및 기자재 구입 및 교육 차량 임차 등 대여비용
- 유학센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관계자 교육비(필수)
- 센터 운영비: 유학생 상해·사고 등 안전관련 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가입비(필수), 교육 및 생활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운영비

등 센터운영 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

· 유학생: 유학생 상해·사고 등 안전관련 보험 가입

· 유학센터(공간): 유학생 생활공간(유학센터 등)에 대해 화재 등 보험가입 필수

○ 필수 지정 용처에 미사용 시, 미사용 금액만큼 정산 시 해당 금액 반납 조치

○ 예비유학센터는 지원자금 사용 용도 중 인건비 필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그런데 「지방보조금법」 제6조³⁾는 지자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비 뿐 아니라 지방비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행과 같이 농촌유학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려는 경우 개정안처럼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단체”로 하기보다 개정안에 농촌유학시설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유사입법례 및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농어촌유학을 ①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와 ② “전입학”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등)로 나뉨.

3) 「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의 농어촌유학 지원대상은 ① 도시 학교 재학생이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와 ② 도시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③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 다시 입학하는 재입학 및 편입학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1. 농어촌학교 정의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2. 농어촌유학 정의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전북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관련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0일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417

참고 1

농촌유학 지원사업 개요(23년도 사업 종료)

- (사업목적)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10~'23)
- (지원대상) 법인격을 갖추고, 장기(6개월 이상) 유학생이 있는 시설
-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컨설팅·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보험 가입비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비
 - 유학센터의 운영 역량, 유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 (사업규모) 국비 938백만원(유학센터 750, 사업관리 188)
 - * 사업관리 :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국비 100% 지원
 - 유학센터 운영 : 7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농촌유학 시행지침)

- 종사자 인건비(필수): 유학센터별 필수 상근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사용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
 - * (참고) 2023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원, 월급 2,010,580원(209시간 기준)
- 교육 운영비(필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 재료 및 기자재 구입 및 교육 차량 임차 등 대여비용
- 유학센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관계자 교육비(필수)
 - * 컨설팅, 관계자 교육비의 합산비용이 총 사업비(아래 공동운영비 제외, 이하 동)의 10% 이상되도록 사업계획 작성 / ** 농식품부 주관 농촌유학 교육과정에 의무 참여
- 센터 운영비: 유학생 상해·사고 등 안전관련 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가입비(필수), 교육 및 생활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운영비 등 센터운영 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
 - 유학생: 유학생 상해·사고 등 안전관련 보험 가입
 - 유학센터(공간): 유학생 생활공간(유학센터 등)에 대해 화재 등 보험가입 필수
 - * 보장범위: 상해사망 1억원, 후유장애 5천만원, 의료실비 1천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백만원, 질병입원 의료비 5백만원, 통원의료비 5만원, 처방조제 2만원 등
- 필수 지정 용처에 미사용 시, 미사용 금액만큼 정산 시 해당 금액 반납 조치
- 예비유학센터는 지원자금 사용 용도 중 인건비 필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원시설(개소)	3	5	12	13	16	19	20	19	22	27	26	29	28	25
유학생 수(명)	-	-	103	199	221	224	238	216	260	266	303	320	314	262
사업비 (백만원)	보조계	99	200	200	375	640	640	640	640	1,460	2,310	1,500	1,500	1,500
	국 고	99	200	200	187.5	320	320	320	320	730	1,155	750	750	750
	지방비	-	-	-	187.5	320	320	320	320	730	1,155	750	750	750

참고 2

‘24년도 교육청·지자체 농촌유학 지원사업 현황

□ 지자체 농촌유학 추진 현황

구분	지원유형	MOU 체결여부	사업 시행 여부	24년 예산 (백만원)	비고
서울교육청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센터형	전남·북 강원	○	360	인당 30~60만원(6개월)
강원교육청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센터형	서울	○	940	인당 30만원 지원
전북교육청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센터형	서울	○	764	인당 30만원 지원
전남교육청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서울	○	720	인당 30만원 지원
울산	센터형	-	-	미반영	사업 미추진
경기도	센터형	-	-	미반영	사업 미추진
강원도	센터형	-	○	미반영	1차 추경 요청(66)
충북도	센터형	-	-	미반영	사업 미추진
충남도	센터형	-	△	미반영	사업 추진여부 미정
전북도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센터형	-	○	240	인당 20만원 지원
전남도	센터형	-	○	84	유학센터 운영비 지원
경북도	-	-	-	미반영	사업 미추진
경남도	-	-	-	미반영	사업 미추진

□ 지역별 농촌 유학생 현황

(‘24년 1학기 기준)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명)
강원도	170	7	-	177
전라북도	127	6	-	133
전라남도	290	45	6	341
합계(명)	587	58	6	651

참고 3

2023년 농촌유학 지원대상 선정 현황

□ 2023년 농촌유학 지원대상 선정 현황

○ 계속지원(22개소)

지역	시설명	농촌유학 시작연도	지원 이력	유학생수 (초·중·고)	국비
계	총 22개 시설			253	730
울산	울주 소호산촌(농촌)유학센터	'05	'11~	16	39
경기	여주 밀머리농촌유학센터	'13	'15~	54	85
	가평 가평민들레농촌유학센터	'17	'18~	5	30
강원	춘천 춘천별빛농촌유학센터	'07	'13~	9	35
	원주 부론자연학교농촌유학센터	'17	'18~	5	30
	횡성 사자산농촌유학센터	'13	'14~	6	32
충북	제천 희망숲산촌유학센터	'11	'16~	7	36.5
	단양 한드미농촌유학센터	'07	'10~	41	89.5
충남	공주 명덕재아이들농촌유학센터	'03	'15~	3	9
	논산 논산양지농촌유학센터	'02	'21~	11	36
전북	완주 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	'11	'14~	18	39
	완주 운주농촌유학센터	'20	'21~	7	32
	임실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09	'12~	13	36
	장수 어울더울농촌유학센터	'19	'20~	2	9
전남	강진 움넛골산촌유학센터	'16	'18~	3	10
	순천 낙안산천농촌유학센터	'21	'22~	3	10
	영암 월인당농촌유학센터	'21	'22~	3	10
	화순 뽕모실 농촌유학센터	'21	'22~	11	33
경북	영주 하늘꽃마을농촌유학센터	'18	'19~	6	32
	예천 시골살이아이들농촌유학센터	'12	'12~	7	32
	봉화 청량산풍경원농촌유학센터	'14	'15~	21	55
경남	하동 바른몸맑은마음배움터농촌유학센터	'17	'19~	2	10

○ 신규지원(2개소)

지역	시설명	농촌유학 시작연도	유학생	국비
계	총 2개 시설		7	20
강원	영월 할아버지집 농촌유학센터	'22	4	10
전북	순창 엄마품자연품 농촌유학센터	'22	3	10